

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5 - 1972 호

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지원계획 공고

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30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

1. 지원규모 : 100억원

2. 신청기간 : '25. 10. 1. ~ '25. 12. 31.(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)

3. 지원대상 :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○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

○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,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*

* 「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, 「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< 신청·지원 제외 대상 >

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
- 대출실행 후 타 시·도로 이전한 소상공인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
-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

○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및 추가 조건(1개 이상) 해당자

- ❶ 공실상가 입점기업, ❷ 임차인(월세), ❸ 창업 3년 이내, ❹ 현재 사업주 외 1인 이상 고용 사업자, ❺ 5% 이상 고금리 용자(시자금 제외) 이용중인 사업자

4.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소상공인 1명당 최대 2천만원 이내
 -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
 - ※ 「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의거, 소상공인 1명당 융자금의 총 한도는
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최대 7천만원 이내 가능
단, 대출잔액에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
- 대출금리 : (전액보증서) CD(91일물) + 1.7% 이내
(부분보증서) CD(91일물) + 2.5% 이내
-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
 - 2년(2년 거치, 일시상환) / 이자 지원 금리 4.0%
 - ※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·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

5. 자금신청 : 온라인 신청(선착순 마감) → 서류제출

- 온라인 신청 :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“보증드림”(앱·PC)을 통한 신청
 - ※ 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재단 방문 신청 가능
 - ② 세종 북부지역 등 원거리 사업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(으뜸길 251, 조치원역 인근) 신청
- 출장 상담 운영일 : 10.1.(수) ~ 10.2.(목), 2일간
- 서류제출 : “보증드림” 또는 재단 방문

6. 신용보증서 발급 : 세종신용보증재단

-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

7. 자금대출 : 11개 대출 협약은행(가나다순)

-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(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), 새마을금고,
수협은행, 신한은행, 신협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카카오뱅크, 하나은행
- ※ 은행에서 담보(보증서) 및 대출 심사 등의 확인을 거쳐 자금대출

8. 자금안내 및 문의

- 11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(044-865-0550)
- ※ 기타문의 :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의(044-300-4123)

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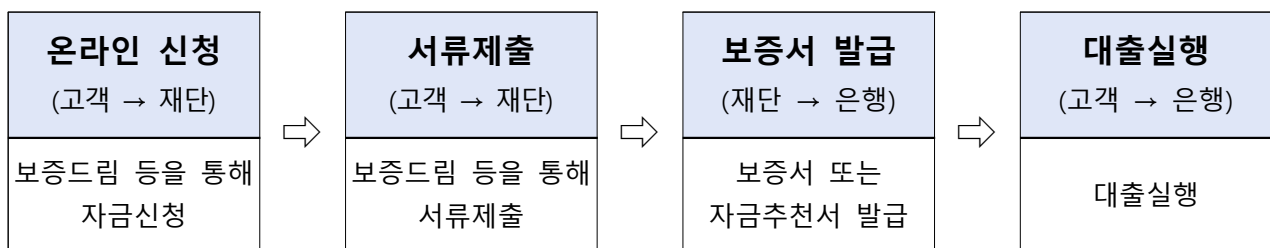
□ 제출서류

서류목록		유의사항
기본서류	사업자등록증명원	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
	임대차계약서 사본	사업장 및 거주지, 임차일 경우
	신분증 사본	앞면
법인기업 추가서류	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약정서 등 작성시 필요
	정관 사본	
	주주명부	현재(보증신청 시점)
	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	
	재무제표	최근 2년

※ 보증심사 또는 대출심사에 따라 별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※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준비하시고,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□ 지원절차



※ “보증드림” 또는 재단 방문(보증드림 활용이 어려운 경우)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재단 방문 신청 가능

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초저금리자금 지원 제외 업종

(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은 신청 가능(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세종시 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) 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(예: 기획부동산 등)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보건업
86	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9612 중	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자금 지원 가능 여부 관련 해석(예외 및 예시)

-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
-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